

유엔군사령부
부대번호 #15259
군우 96205-5259



유엔군사령부
규정 551-5

2015년 3월 24일

군사작전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안보견학

*본 규정은 2003년 12월 4일자 유엔군사령부 규정 551-5를 대체한다.

사령관을 대리하여:

MARK C. DILLON
미 공군 소장
부참모장

//원본 서명자//

김진호
대한민국 육군 중령
부관과, 유엔사/연합사

공식적으로:



GARRIE BARNES
출판 및 기록 관리처장

개요. 본 개정본은 2003년 12월 4일 자 유엔군사령부(유엔사) 규정 551-5 공동경비구역 견학 및 스웨덴/스위스 중립국감독위원회 캠프와 대성동 마을 방문을 위한 신청, 일정 수립, 실시 절차를 대체한다. 본 규정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유엔사군정위 본부구역) 안보견학의 일환으로 비무장지대 출입이 인가된 인원과 관련하여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 제반 조항이 준수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책임을 규정하고 실행하며, 판문점 유엔사군정위 본부구역,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웨덴/스위스 캠프, 도라 전망대, 제3땅굴을 포함한다.

변경 개요. 본 문건은 제목이 수정되었으며, 공동경비구역 견학 및 스웨덴/스위스 중립국감독위원회 캠프와 대성동 마을 방문을 위한 신청, 일정 수립, 실시 절차라는 제목의 이전 규정을 갱신한다. 전체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적용. 본 규정은 유엔사군정위 본부구역 안보견학에 참가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출입을 희망하는 군인이나 민간인을 포함한 모든 인원에게 적용된다.

보충.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부대번호 #15294, 군우 96205-5294 에 의해 승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하 사령부 자의에 따른 본 규정에 대한 보충은 금지된다.

기록 관리. 본 규정에 규정된 과정에 따라 작성된 기록은 미 육군 규정 25-400-2나 적용가능한 복무 규정에 따라 확인, 유지, 처분된다. 기록 제목 및 설명은 <https://www.arims.army.mil>의 미 기록 정보 관리 시스템 (ARIMS)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선 방안 제안. 본 규정의 담당자는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이다. 사용자는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부대번호 #15294, 군우 96205-5294로 미 국방성 양식 2028 (규정 개선 사항 및 공백 양식) 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안하거나 평을 발신할 수 있다.

배급. 전자 매체 한정 (EMO).

목차

제 1 장

개요, 1 쪽

- 1-1. 목적
- 1-2. 방침
- 1-3. 참고 문헌
- 1-4. 약어 설명

제 2 장

책임, 1 쪽

- 2-1. 유엔군 사령관
- 2-2. 유엔사 부참모장
- 2-3. 유엔사군정위 비서장
- 2-4. 유엔사군정위 공동일직장교
- 2-5. MACHA 안보견학 담당관
- 2-6. 한국군 유엔사군정위 연락단
- 2-7.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
- 2-8. 한국군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
- 2-9. 유엔사 공보실

제 3 장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MACHA) 안보견학 절차, 5 쪽

- 3-1. MACHA 안보견학 분류
- 3-2. 일정 수립
- 3-3. 귀빈 및 내빈 견학
- 3-4. 일반 견학
- 3-5. 중립국감독위원회(중감위) 방문객 및 리셉션
- 3-6. 단체 규모 제한 및 제약사항

제 4 장

작전지역, 11쪽

별지, 13쪽

- A. 참고 문헌
- B. 군정위 본부구역(MACHA) 방문객들을 위한 정보
- C. 귀빈 및 내빈 견학 신청 양식 및 안내서
- D. 귀빈/내빈 견학단의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식당 이용
- E. 일반 견학 신청 양식 및 안내서
- F. 유엔사가 지정한 단체의 제 3 땅굴 및 도라 전망대 출입
- G. 군정위 본부구역(MACHA), 도라 전망대, 제 3 땅굴 요도
- H. 군정위 본부구역(MACHA)을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원보증 절차

양식 목록

- 양식 C-1. 귀빈/내빈 견학 신청 양식, 20 쪽
- 양식 C-2. 귀빈/내빈 견학 - 계획 수립 지침, 21 쪽
- 양식 C-3. 귀빈/내빈 견학 - 규칙 및 절차, 22 쪽
- 양식 E-1. 일반 견학 신청 양식, 24 쪽
- 양식 E-2. 군정위 본부구역(MACHA) 견학자 명단, 25 쪽
- 양식 E-3. 일반 견학 - 계획 수립 지침, 27 쪽
- 양식 E-4. 일반 견학 방문객 확인서(유엔사 양식 12EK), 28 쪽
- 양식 H-1. 대한민국 국민 신원보증서, 36 쪽

용어집, 37 쪽

제 1 장 개요

1-1. 목적

본 규정은 관문점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유엔사군정위 본부구역), 중립국감독위원회(중감위) 스웨덴/스위스 캠프, 도라 전망대, 제3땅굴 등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유엔사군정위 본부구역 안보견학장들을 방문하기 위한 견학 신청 및 실시와 관련된 책임 및 절차를 규정한다.

1-2. 참고 문헌

필수 및 관련 문건은 별지 A에 열거되어 있다.

1-3. 약어 설명

본 규정에 사용된 약어는 용어집에 설명되어 있다. 본 규정의 목적상 군정위 본부구역은 이하 MACHA로 기술되며, 이는 모두 유엔사 측 MACHA만을 의미한다.

1-4. 방침

일정상 지원이 가능하고, 경계 고려사항에 부합하며, 작전 일정과 충돌하지 않는 비무장지대 방문은 권장하는 것이 유엔사의 방침이다. 본 규정에 포함된 절차 및 유엔군 사령관과 유엔사 부참모장이 규정하는 절차를 준수하는 한, 비무장지대 안보견학장 방문을 희망하는 모든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본 규정은 비전투원들이 이들 지역에 출입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경계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가정한다. 다양한 유엔사군정위의 활동, 인도주의적 활동 및 주요 귀빈 방문 등은 예정된 유엔사군정위 본부구역 안보견학에 우선할 수 있다.

제 2 장 책임

2-1. 유엔군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은 정전협정의 서명자로서 한국(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전협정 제반 규정의 이행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유엔군 사령관은 유엔사 부참모장을 본 규정에 대한 예외를 승인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자로 지정하였다.

2-2. 유엔사 부참모장

유엔군 사령관은 MACHA 안보견학 감독 권한을 유엔사 부참모장에게 위임하였다.

2-3. 유엔사군정위 비서장

비서장은 유엔군 사령관이 관할하는 MACHA 내 안보견학을 지시하며, 견학 프로그램을 위한 출입 및 규정상 통제조치를 승인한다. 비서장은 비무장지대 안보견학과 관련한 모든 방침을 수립하고 검토하며, 필요시 견학 프로그램의 변경을 지시한다. 비서장은 MACHA 견학 일정 수립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로서, 유엔사군정위 및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의 임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MACHA 귀빈 견학, 내빈 견학 및 언론사 견학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승인하며, 필요시 MACHA 견학 일정 수립 업무를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참모에게 위임한다. 일정 수립이 완료된 안보견학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은 방문객들의 경호 및 안전에 미칠 영향을 판단할 수 있도록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 또는 부대대장과 협조한다. 비서장은 일상적인 MACHA 안보견학 관련 변경사항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다.

2-4. 유엔사군정위 공동일직장교

공동일직장교는 MACHA 안보견학의 전반적인 실시 및 운영을 책임진다. 공동일직장교는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서 지시하는 MACHA 견학 방침 및 절차가 시행되는지 확인한다. 공동일직장교는 견학 신청 기관들이 MACHA 안보견학 방침 및 절차를 인지하도록 하고, 방침 및 절차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이 관련 당사자들에게 전파되고 실행되도록 한다. 공동일직장교는 MACHA 안보견학 방침에 의거하여 특정 단체 또는 본 규정의 의도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행위를 하는 단체의 MACHA 출입을 불허한다.

2-5. MACHA 안보견학 담당관

MACHA 안보견학 담당관은 유엔사군정위 공동일직실의 일원으로서 MACHA 안보견학 전반에 대한 협조, 계획 및 일정 수립을 책임진다. MACHA 안보견학 담당관은 공동일직장교의 감독하에 근무하나, 모든 MACHA 견학 신청에 관련해서는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이 지정한 참모와 직접 연락한다. MACHA 안보견학 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 a. 관문점 MACHA, 도라 전망대, 중감위 캠프 및 제 3 땅굴 견학을 협조하고 일정을 수립하는데 있어 유엔사군정위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b. MACHA 안보견학의 일상적인 운영을 관리한다.
- c. 견학 업무를 시행하기 위해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제반, 중감위 및 기타 기관들과 협조한다.
- d. 모든 MACHA 귀빈 견학, 내빈 견학 및 언론사 견학 신청서를 유엔사군정위 비서장 또는 비서장이 지정한 참모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은 후,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서 제공하는 지침에 따라 신청된 일정을 수립한다.
- e. MACHA 귀빈 견학, 내빈 견학, 언론사 견학뿐만 아니라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의 일반 견학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선착순으로 일정을 수립한다.
- f. MACHA 및 주변 지역 견학 관련 서류 및 일정을 각 견학 신청자 혹은 신청기관에 배포한다/이메일로 발송한다.
- g. MACHA 및 주변 안보견학장의 주간 견학 일정표를 매일(주말·공휴일 제외) 최신화하여 발행한다.
- h. 이미 일정에 반영된 견학에 대한 변동사항은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즉시 통보하며, 해당 신청 기관이 다른 일자로 견학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i. 견학을 위한 식사 소요 협조를 지원하고 유엔사 경비대대 혹은 중감위에 식당 지원을 요청한다.
- j. MACHA 안보견학 지원을 위한 행정 및 기록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k.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와의 협조를 통해, 그리고 주한미군에 의해 발행된 지시에 의거해 분기별 견학 미실시일에 대한 각서를 작성, 비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l. MACHA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원보증 요건이 충족되도록 한국군 유엔사군정위 연락단(군정위연락단)과 협조한다.

- m. 통일대교 통과를 위한 차량 출입을 협조한다.
- n. 귀빈 및 내빈의 대한민국 통일부 자유의 집 관문점 갤러리 방문에 협조한다.

2-6. 한국군 유엔사군정위 연락단(군정위연락단)

군정위연락단은 대한민국 정부가 후원하는 모든 MACHA 안보견학 활동과 관련하여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와의 연락을 책임진다. 군정위연락단은 MACHA 견학 및 언론사 견학 신청서를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할 군정위연락단의 MACHA 안보견학 협조관(군정위연락단 견학 협조관)을 임명한다. 군정위연락단 견학 협조관의 주업무 담당자는 유엔사군정위의 MACHA 안보견학 담당관이다. 군정위연락단은 또한 MACHA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원보증 요건이 충족되도록 MACHA 안보견학 담당관과의 협조를 책임진다.

2-7.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

MACHA의 주목적은 유엔군 사령관이 북한군 및 기타 북한 기관들과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안보견학장은 MACHA의 부차적 기능이다. 유엔군 사령관은 대화/협상과 안보견학을 관리하는 두 가지 임무를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에게 부여하였다. 유엔군 사령관은 MACHA 출입이 인가된 모든 인원들에 대한 경호 및 보호 임무를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에게 부여하였다. MACHA 출입 권한 및 통제는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에게 전적으로 위임되어 있으며,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이 견학을 중단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MACHA 내에서 인명 보호 및 경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전술적 결정을 급박히 내려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유엔사군정위 비서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은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 a. 모든 MACHA 안보견학에 대한 경호 및 안전을 제공한다.
- b. 모든 MACHA 방문객들을 안내하고 보호하며, 방문객들이 북한군 측 인원(군인이나 민간인)들과 접촉 혹은 통신하지 않도록 한다.
- c. 유엔사군정위의 통지문 전달, 유엔사군정위-북한군 간 회담, 남북 양자 회담, 6자 회담, 시설 및 경내 유지 활동, 송환 등 남북 간의 접촉이 수반되는 활동을 지원한다. 남북 간 접촉과 관련된 업무는 안보견학 업무에 우선한다.
- d.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정기적으로 혹은 필요시 남북연락사무소,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및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간 회의가 열릴 수 있다. 주요 안보견학에 대해서는 사전 회의를 통해 협조한다.
- e. 인원과 차량이 캠프 보니파스에 진입하기 전에 검색 및 검사를 실시한다.
- f.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의 지시에 따라 MACHA 일반 견학 브리핑이 최신화 될 수 있도록 한다.
- g. 견학 중 차량 및 도보 이동 구간에 대한 절차 및 방침을 수립하고, 필요시 작전 소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정한다.
- h. 일반 견학간 차량 및 도보 이동 구간에서의 이동을 협조하고 수송 수단을 제공한다.
- i. 지원이 가능할 경우, MACHA 귀빈 혹은 내빈 견학 수송을 지원한다.

j. 귀빈 및 내빈 견학을 제외한 모든 방문객들이 캠프 보니파스에서 MACHA 로 출발하기 전에 일반 견학 방문객 확인서(유엔사 양식 12EK, 별지 E, 양식 E-4)에 서명하도록 한다.

k. 방문객들이 캠프 보니파스에서 MACHA 로 출발하기 전에 본 규정의 복장 및 용모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복장을 착용하였는지 확인한다. 허용 가능한 복장 및 용모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에게 있다.

l. 견학단이 유엔사 경비대대 및/또는 MACHA 안보견학 담당관에게 사전 연락을 취하지 않고 예정보다 10 분 이상 늦게 캠프 보니파스에 도착할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견학을 취소한다.

m. 방문객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MACHA 안보견학을 종료하거나 조정한다. 이러한 위험 판단은 경호 및 안전 여건에 근거하여 현장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은 유엔사 작전명령 및 절차에 의거하여 수립된 지침에 따라 사건을 보고하며,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도 통지한다.

n. 견학단의 구성원이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인원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견학을 종료시킨다.

o. 부대 식당에서 충분히 수용할 여력이 있을 경우, 승인된 견학 중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 한해 식사 지원을 협조한다.

p. 적절한 담당자를 임명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MACHA 안보견학 담당관과 긴밀한 연락과 협조를 실시하도록 한다.

(1) 일정/견학과 관련된 모든 문제(견학 신청, 신청 후 견학 불참, 지각으로 인한 취소, 기상 혹은 도로 상태로 인한 지연).

(2) 수송 임무 및 자산 협조.

(3) 경계, 경호 안내 협조 및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의 MACHA 일반 견학 브리핑 제공.

(4) 다음 분기 시작(즉, 9 월 1 일, 12 월 1 일, 3 월 1 일, 6 월 1 일) 최소 45 일 이전까지 각 분기별 “견학 미실시일”로 지정되어야 하는 일자에 대한 의견 제출.

(5)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의 행정 및 기록 관리 업무.

q. 안보견학장 방문객에 대한 경호 제공, 일반 견학을 위한 수송 자산 제공 및 필요시 귀빈 및 내빈 견학에 대한 추가 지원 제공을 책임진다.

2-8. 한국군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

a.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부대대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 부재 시 상기 명시된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의 책임을 수행한다.

b. 안보견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 관리, 운영비 및 수송 자산의 제공을 협조한다.

c. 안보견학을 지원하는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의 모든 수송 자산을 정비 완료된 운행 가능 상태로 유지한다.

d. 모든 한국군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병사들이 한국 육군 규정에 따른 능력 배양 훈련을 받도록 한다.

e.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을 대신하여 모든 한측 기관 및 조직들과 협조한다.

f. 안보견학 실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과 의논한다.

2-9. 유엔사 공보실(PAO)

a. 언론사 인원으로 부터 MACHA 출입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출입 희망일로부터 최소 14 일 전까지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 제출한다.

b. 언론사의 MACHA 견학 방문을 필요에 맞게 조정하고, 견학 신청서를 출입 희망일로부터 최소 14 일 전까지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 제출한다.

c. 귀빈 및 내빈 견학 취재를 포함해 MACHA 를 출입하는 모든 언론 기관에 적절한 교육을 받은 안내요원을 배정한다. 안내요원은 장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민간인으로 한다. 공보실은 언론사 인원 10 명당 안내요원 1 명을 제공한다(언론사 인원 11-20 명에는 공보실 안내요원 2 명 필요, 언론사 인원 21-30 명에는 공보실 안내요원 3 명 필요, 등). 이에 대한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엔사군정위 비서장 혹은 비서장이 지정한 승인권자가 별도로 승인해야 한다.

d. MACHA 를 출입하는 언론사 인원들이 지정된 완장을 반드시 착용해야 함을 각 부대에 숙지시킨다. 이 완장은 안내를 담당할 공보실 인원이 제공한다.

e. 남측 비무장지대 전역에 걸쳐 언론사 인원의 총 수가 어느 시점에서든 동시에 100 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f. 출입 희망일까지 14 일이 남지 않은 시점에 유엔사군정위에 제출된 언론사 출입 신청서에 대해서는 유엔사 공보실이 유엔사군정위 비서장 혹은 비서장이 지정한 승인권자와 직접 협의한다. 이처럼 촉박하게 통보된 언론사 활동은 유엔사 임무에 큰 도움이 되고,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와 유엔사 공보실 참모인원의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만 허가된다.

제 3 장

MACHA 안보견학 절차

3-1. MACHA 안보견학 분류

a. MACHA 귀빈(DV) 견학: 귀빈이라 함은 유엔군 사령관, 주한미군 의전실장, 유엔사군정위 혹은 미 대사관이 지정한 모든 인원을 의미한다. 귀빈의 직위는 군인의 경우 대령(DV-7) 이상, 민간인은 고위공무원단(SES) 1 급(또는 동급) 이상이다. MACHA 귀빈 견학은 견학 일정 수립에 있어 MACHA 일반 견학 및 MACHA 내빈 견학에 우선한다. 유엔사군정위가 후원하는 MACHA 귀빈 견학에는 유엔사군정위 브리핑, 회담장 구역, 자유의 집 판문점 갤러리, 공동일직실, 제 3 초소, 아울렛 초소, 돌아오지 않는 다리, 중감위 브리핑/중식, 도라 전망대 및 제 3 땅굴이 포함될 수 있다.

b. MACHA 내빈(SG) 견학: 내빈이라 함은 귀빈의 자격요건을 갖추지는 못 하였으나, 유엔군 사령관에 의해 주요 인사로 판단되어 견학 일정 수립에 있어 MACHA 일반 견학보다 우선순위가 부여되는 인원을 의미한다. 내빈의 예로는 유엔사나 6.25 전쟁과 역사적인 관계 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 유엔사, 연합군사령부(연합사), 주한미군, 유엔사군정위,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한국군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중감위, 군정위연락단의 초청 인사; 귀빈의 부양가족;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이 지정한 기타 군인 혹은 민간 단체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엔사군정위의 MACHA 내빈 견학에는 유엔사군정위 브리핑, 회담장 구역, 자유의 집 판문점 갤러리, 공동일직실, 제 3 초소, 아울렛 초소, 돌아오지 않는 다리, 중감위 브리핑/중식, 도라 전망대 및 제 3 땅굴이 포함될 수 있다. 다음 두 가지 범주에 속하는 내빈 견학은 수시로 실시된다:

(1) 지도자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EOP): 지도자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은 영향력 있는 한국인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엔사의 지역사회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6년 2월 수립되었다. 지도자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은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민간 지도층 인사들이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도자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내빈 견학은 중일 프로그램으로, 한국 현황 브리핑과 유엔사군정위 브리핑 및 MACHA 내 모든 주요 장소에 대한 견학으로 이루어진다.

(2) MACHA 언론사 견학: MACHA 언론사 견학은 정전협정, 한반도 안보, 북한의 최근 정치 상황 및/또는 기타 관련 위기나 현안에 대한 내용을 취재하고자 하는 명망있는 전문 언론 기관들을 위한 것이다. 언론사 견학에 참가하는 단체의 규모는 최대 40 명이다(적정 인원의 유엔사 공보실 안내요원이 동행해야 함).

c. MACHA 일반 견학: MACHA 일반 견학은 민간 여행사, 한국군 및 미군 부대를 대상으로 하는 견학으로 정의된다. MACHA 일반 견학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를 통해 인가되고 조정되며,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가 실행한다.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의 일반 견학에는 통상적으로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브리핑, 회담장 구역, 제 3 초소, 돌아오지 않는 다리, 도라 전망대, 제 3 땅굴이 포함된다.

d. 중감위 방문객 및 리셉션: 중감위에서 초청하는 방문객과 주관하는 리셉션은 MACHA 안보견학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엔사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중감위를 위한 지침도 본 규정을 통해 제공된다.

3-2. 일정 수립

a. MACHA 안보견학은 통상적으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되며, 일요일과 월요일은 견학 미실시일로 지정된다. 한국이나 미국의 공휴일,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부대 전체) 훈련일,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창설일 또는 판문점 내에서 군정위 회의나 기타 공식 회의/활동 예정일도 견학 미실시일로 지정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고위급 귀빈 방문 시에는 견학 미실시일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승인 여부는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이 결정한다.

b. 귀빈 견학, 내빈 견학, 언론사 견학의 총 횟수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 일 4 회, 토요일에는 1 일 2 회로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는 추가 견학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 공동일직장교와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가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 한해, 유엔사군정위 비서장 혹은 비서장이 지정한 참모가 허가할 수 있다.

c. 하절기(4 월부터 10 월까지)에는 8 개의 일반 견학 시간대가 있으며, 그 중 4 개는 지정된 여행사들이 상업적 용도로, 나머지 4 개는 한/미 군부대 혹은 기관들이 공무 용도로 사용하도록 할당되어 있다. 동절기(11 월부터 3 월까지)에는 7 개의 일반 견학 시간대가 있으며, 그 중 4 개는 지정된 여행사들이 상업적 용도로, 3 개는 한/미 군부대 혹은 기관들이 공무 용도로 사용하도록 할당되어 있다.

d. MACHA 견학은 얼마든지 미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작전상 소요로 인해, 그리고 견학 미실시일이 매 분기별로 지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견학 희망일 2개월 전부터 일정에 반영될 수 있다. 그러나 지정된 부대 혹은 여행사는 협상을 통해 일반 견학 시간대를 장기적으로 할당받을 수 있다. 이는 반드시 해당 부대나 여행사의 지정 대리인과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이 서명한 양자 간 서면 합의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 견학 시간대에 대한 모든 합의사항은 매 2년마다 검토하고 갱신한다.

e. 귀빈 견학, 회담, 특별 활동 등 MACHA 에서 충분한 예고 없이 갑자기 실시되는 공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또는 보안상의 이유, 악천후/도로 상태 악화, 임무 소요 등으로 인해 예정된 MACHA 견학을 취소할 수도 있다.

f. MACHA 안보견학 담당관을 통해 일정을 수립하지 않은 채 캠프 보니파스에 도착한 견학단은 캠프 보니파스 출입이 금지된다.

3-3. 귀빈 및 내빈 견학

a. 귀빈 및 내빈 견학 신청서는 한국군, 미군 혹은 유엔사 부대, 한국 정부 기관이나 주한 외국 대사관에서 유엔사군정위 안보견학 담당관 또는 군정위연락단 견학 협조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귀빈이나 내빈의 MACHA 견학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1) 신청서에 기재된 방문객이 본 규정에 명시된 자격요건 조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 (2) 신청서는 적절한 안보견학 담당관/협조관에게 최대한 미리 제출해야 하나, 작성이 완료된 신청서가 견학 희망일로부터 최소 14일 전까지는 MACHA 안보견학 담당관에게 도착하도록 한다. 신청서는 본 규정의 별지 C, 양식 C-1에 있는 표준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3) 희망하는 경우, 귀빈 혹은 내빈이 유엔사, 한국 및 6·25 전쟁 관련 역사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통일부 자유의 집 관문점 갤러리 방문을 희망하는지의 여부를 표기한다.
- (4) 희망하는 경우, 식당 지원을 신청한다.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식당 혹은 중감위 캠프에서의 중식 또는 석식 신청은 반드시 견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음식 알레르기나 식사 관련 요구사항(예: 채식주의자, 돼지고기 제외)이 있을 경우 이를 표기한다. 식대는 선불이다(양식 C-2 참조).
- (5) 견학에 참가하는 모든 인원들이 별지 B “MACHA 방문객들을 위한 정보”에 명시된 MACHA 견학 방침 및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도록 한다.
- (6) 방문객의 연령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의료상의 문제를 MACHA 안보견학 담당관에게 알린다. MACHA 안보견학 담당관은 이러한 의료상의 문제에 대해 모든 관련 기관들이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한다.
- (7) 필요시, 대한민국 국민들이 MACHA 견학에 참가하기 전에 본 규정의 별지 H에 열거된 신원보증 절차를 준수하도록 한다.

b. 출발지에서 캠프 보니파스까지 왕복하는 데 필요한 교통편은 견학 신청 기관 또는 개인의 책임사항이다. 캠프 보니파스에서 견학장까지의 육상 교통편은 유엔사군정위나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가 제공한다.

c. 각 귀빈/내빈 단체는 항시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나 유엔사군정위 인원 그리고 경호요원의 안내를 받는다.

d. MACHA 귀빈/내빈의 견학 일정이 확정되면, 신청 기관은 방문객 개개인의 성명, 계급, 군별, 직책, 각 귀빈의 약력, 이용할 교통수단의 제조사, 모델명, 색상, 차량 등록 번호, 캠프 보니파스 예상 도착 시각, 그 외 견학과 관련 또는 예상되는 모든 특이사항을 MACHA 안보견학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e. MACHA 견학에는 본 규정과 경호요원 또는 안내요원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민감한 지역의 방문이 수반된다는 점을 모든 방문객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f. MACHA 를 방문하는 모든 인원들은 출발지를 떠나기 전에 신분증 혹은 여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통일대교를 통과하기 전에 신원 확인이 실시될 수 있다.

g. 귀빈/내빈 견학단이 신청서에 기재된 또는 승인된 견학을 시작하기에 앞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해진 일정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MACHA 안보견학 담당관에게 최대한 신속히 연락한다. 기상, 질병 혹은 피로 등의 이유로 견학 단체가 도라 전망대를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를 일례로 들 수 있다.

3-4. 일반 견학

a. MACHA 일반 견학 가능 여부는 매 견학에 필요한 경호, 군수 및 소요 시간을 감안한 유엔사군정위와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의 지원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각 견학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방문객을 수용하는 것에 최대 중점을 둔다.

b. 견학을 수시로 실시해야 하는 다수의 지정된 기관이나 여행사들이 있다. 이러한 기관이나 여행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관이나 여행사의 지정 대리인과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이 서명한 양자 간 서면 합의에 따라, 견학 일정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표준화된 주간 견학 일정표를 작성한다. 견학 일정이 계획되지 않은 나머지 시간대는 자격요건을 갖춘 부대, 기관 혹은 단체에 선착순으로 배정된다.

c. 모든 MACHA 일반 견학 신청서는 반드시 다음의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1) MACHA 일반 견학 신청서는 견학 희망일로부터 최소 14 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신청서는 본 규정의 별지 E, 양식 E-1 에 있는 표준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견학 시작 시각으로부터 48 시간 전까지 MACHA 일반 견학 방문객 전원의 성명이 기재된 명단을 MACHA 안보견학 담당관에게 제출한다.

d. 일반 견학 방문객들은 반드시 이러한 요건들을 읽고 숙지한 후 별지 E, 양식 E-4(유엔사 양식 12EK)에 서명해야 한다. MACHA 를 방문하는 모든 인원들은 출발지를 떠나기 전에 신분증 혹은 여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통일대교를 통과하기 전에 신원 확인이 실시될 수 있다.

e. MACHA 일반 견학 안내요원은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 (1) 캠프 보니파스에 도착하는 방문객들을 맞이하며, 모든 인원들을 지정된 브리핑 장소로 안내한다.
- (2) 각 방문객에게 방문객 배지를 제공하고, MACHA 내에서 적절히 패용하게 한다.
- (3) 승인된 최신 버전의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의 MACHA 일반 견학 브리핑을 제공하고, 질문에 답변한다.
- (4) 각 방문객이 1 부씩 서명한 유엔사 서식 12EK (양식 E-4)를 회수한다.
- (5) 비무장지대 견학간 차량 및 도보로 이동하는 전 구간에 걸쳐 모든 방문객들을 안내하고 브리핑을 제공한다.
- (6) 방문객들이 돌발 행위를 저지르거나, 지시에 불응 또는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의 경계 임무를 방해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견학을 종료시킨다.
- (7) 모든 방문객들이 소속된 견학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 (8) 견학과 관련된 일체의 특이사항이나 사건에 대해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에 보고한다.

3-5.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방문객 및 리셉션

a. 방문객

- (1) 중감위 스웨덴 및 스위스 대표단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의 승인하에 비무장지대 내 중감위 캠프 방문을 주관하는 것이 허가된다. 방문객들은 반드시 스웨덴 혹은 스위스 대표단 소속 장교의 초청을 받아야 한다.
- (2) 이러한 방문객들에 대한 승인은 MACHA 출입 절차를 통해 처리된다. 신청서는 유엔사군정위 공동일직장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 (3) 기타 장소를 방문하기 위한 별도의 허가를 요청하여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감위 방문은 통상적으로 스웨덴/스위스 캠프로 제한된다. 중감위 인원들이 방문객들을 회담장 구역으로 안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일직장교 및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와 사전에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 (4) 스웨덴이나 스위스 측 방문객들은 필요시 협조를 통해, 자신들을 초청한 중감위 대표단과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경호요원들의 엄격한 통제 및 안내하에 유엔사 측 MACHA 에 출입할 수 있다. 방문객들은 군사분계선을 넘거나 북한군 측 MACHA 에 진입할 수 없다. 스웨덴 및 스위스 대표단의 방문객들이 MACHA 를 출입하는 데 인가된 유일한 통로는 유엔사 초소를 경유하는 것이다.

b. 리셉션

- (1) 중감위에서 주관하는 리셉션에는 보통 대규모의 인원이 참석한다. 따라서 리셉션에 참석하는 방문객들은 MACHA 출입 절차의 적용 대상이기는 하나, 본 규정에 명시된 단체 규모 제한에서는 면제된다.

(2) 스웨덴/스위스 대표단 방문객들이 캠프 보니파스까지 이동하는 교통편은 초대받은 방문객 각자의 책임사항이다. 스웨덴/스위스 방문객들이 캠프 보니파스에서 판문점이나 스웨덴/스위스 캠프까지 이동하는 데 있어 유엔사군정위 및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의 차량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엔사군정위 비서장 및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스웨덴/스위스 대표단에서 주관하는 리셉션에 참석한 인원들의 행동 및 이동은 이들을 초청한 각 대표단 수석대표의 책임사항이다. 방문객들은 항상 각 중감위 대표단의 안내를 받도록 한다.

(4) 스웨덴/스위스 캠프를 방문할 목적으로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도록 인가된 차량들은 적절한 식별 표식을 부착한다(예: 대한적십자사, 유엔사군정위,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혹은 중감위 깃발). 스웨덴 혹은 스위스 대사의 차량 이동 시에는 반드시 해당 국기를 부착해야 한다.

3-6. 단체 규모 제한 및 제약사항

a. 모든 MACHA 견학 신청은 다음과 같은 규모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1) MACHA 일반 견학 90 명.

(2) MACHA 귀빈/내빈 견학 65 명(버스 제한과 유엔사군정위 인원을 위한 좌석이 필요함).

(3) 중감위 캠프에서 브리핑을 받고 중식을 하는 MACHA 귀빈/내빈 견학 55 명.

(4) MACHA 언론사 견학 40 명(필요한 유엔사 공보실 안내요원을 제외한 숫자임).

b. 모든 MACHA 방문객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제약사항이 적용된다:

(1) 비무장지대 방문객들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의 승인 및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의 동의 없이는 무기를 소지할 수 없다.

(2) 모든 견학 방문객들은 안보견학장 방문간 개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예: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3) 모든 방문객들은 반드시 지정된 안보견학장 구역 내에만 있어야 한다.

(4) 모든 비무장지대 안보견학장 방문객들은 본 규정에 명시된 복장 및 용모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별지 B의 “MACHA 방문객들을 위한 정보”를 참조한다.

(5) 국제 기준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10 세 미만의 인원은 MACHA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6) 캠프 보니파스와 판문점은 주한미군 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지정국 인원(DCP)과 관련한 주한미군 규정 190-7 제반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지정국 인원들의 경우, 견학 신청서 제출 시 선명하게 식별 가능한 여권 전자사본을 MACHA 안보견학 담당관에게 반드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정국 인원이 포함된 견학 신청서가 선명하게 식별 가능한 여권 전자사본과 함께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

(7) 주한미군 테러위협대비태세 및 국지적 위협에 대한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의 판단에 따라, MACHA 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 및 차량에 대한 검색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결정은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이 내리며, 이에 불응하는 모든 인원은 이 구역으로의 출입이 금지된다.

제 4 장 작전지역

a.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 정전협정에 따라, 적대 병력의 분리를 위해 비무장지대를 분할하는 군사분계선이 한반도 폭을가로질러 설정되었다. 정전협정은 쌍방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각 2킬로미터씩 후퇴해 각방의 지역에서 모든 군인, 무기, 장애물 및 방어 구조물을 철거하도록 규정하였고, 이를 통해 폭 4킬로미터, 길이 241킬로미터의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었다. 정전협정은 군사정전위원회의 명확한 승인 없이는 누구도 비무장지대에 출입하거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b.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MACHA): MACHA는 유엔사 측 군정위와 북한군 측 군정위 양측의 통제하에 있다. MACHA는 유엔사 측 군정위와 북한군 측 군정위 간 정전 관련 문제를 협상하고 논의하기 위한 장소로 설정되었다. MACHA는 별지 G에 표시되어 있다. 본 규정에서 MACHA는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내 판문점에서 유엔군 사령관의 안보견학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지역을 지칭한다. MACHA는 지리적으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그 남쪽과 북쪽에 모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사 측 구역의 방문객들은 안내요원과 함께 유엔사 건물 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북한군 측 구역에 들어가는 것이 허가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북한군이 후원하는 판문점 견학단들도 군정위 회담장 건물 내부를 제외하고는 유엔사 측 MACHA에 출입하는 것이 허가되지 않는다.

c. MACHA 인근 통일대교 이북에 위치한 인가된 안보견학장: 별지 G의 요도를 참조한다.

(1) 판문점:

- (a) 설립일: 1970년 5월 1일
- (b) 책임 부대: 유엔군사령부
- (c) 주요 시설: 회담장 구역, 자유의 집, 평화의 집, 공동일직실, 제 3 초소, 돌아오지 않는 다리,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웨덴/스위스 캠프, 캠프 보니파스 기념품점 및 안보견학관
- (d) 최대 수용 인원: 90명

(2) 도라 전망대:

- (a) 설립일: 1987년 1월 1일.
- (b) 책임 부대: 대한민국 육군 제 1보병사단
- (c) 주요 시설: 강당, 전망대, 소규모 기념품점
- (d) 최대 수용 인원: 300명

(3) 제 3 땅굴:

(a) 설립일: 1979 년 1 월 20 일

(b) 책임 부대: 대한민국 육군 제 1 보병 사단

(c) 주요 시설: 소규모 홍보 영상관, 소규모 전시관, 땅굴 진입용 모노레일, 땅굴 도보 진입로, 소규모 기념품점

(d) 최대 수용 인원: 250 명

별지 A

참고 문헌

제 I 절. 필수 문건

정전협정, 1 권, 1953 년 7 월 27 일

- a. 한국 정전협정이라 함은 1953 년 7 월 27 일 체결된 정전협정 및 모든 정전협정 후속합의서를 포함한다.
- b. 비무장지대/한강하구라 함은 정전협정 2 권(지도)에 도식된 지역 중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MACHA)을 제외한 지역이다.

제 II 절. 관련 문건

유엔사 규정 551-4 한국 정전협정 준수

유엔사 규정 525-2 대성동 민사 행정

별지 B

군정위 본부구역(MACHA) 방문객들을 위한 정보

MACHA 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들은 반드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적절한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

a. 군인들은 반드시 각 군별 예복(정복 혹은 근무복 등)이나 적절한 사복을 착용해야 한다.

b. 민간인들은 반드시 간편복, 정장에 준하는 복장 또는 정장을 적절히 착용해야 한다. 양복 정장 또는 청바지와 폴로 스타일 셔츠나 칼라가 있는 정장용 셔츠 등이 포함된다. 신발은 반드시 발가락을 가려야 하며, 단화 혹은 부츠 등이 허용된다. 가방, 여성용 핸드백, 카메라 가방은 허용되나 반드시 유엔사 측 MACHA 로 해당 인원들을 수송하는 차량 안에 보관해야 한다. 재킷 및 외투는 들고 다녀서는 안 되며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c. 유엔사 측 MACHA 내에서 다음과 같은 사복 및 장신구는 엄격히 금지된다:

- (1) 소매가 없거나 몸통이 노출되는 셔츠/상의.
- (2) 모욕적이거나, 불경스럽거나, 선정적이거나, 비하하는 내용이 묘사된 옷.
- (3) 찢어진 청바지 또는 속옷이나 은밀한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바지.
- (4)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반바지 또는 치마.
- (5) 달라붙는 운동용 하의 및 레깅스처럼 너무 얇거나 신축성이 과한 소재로 된 겹옷.
- (6) 체육복, 로고가 새겨진 상의 혹은 모든 종류의 운동복.
- (7) 슬리퍼, 샌들 혹은 발가락이 노출된 신발.
- (8) 사냥용 복장 등 군대식 위장무늬가 있는 옷.
- (9) 너무 큰 옷이나 지나치게 헐렁한 바지.
- (10)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착용하는 가죽 조끼 및 승마용 가죽 각반.
- (11) 우산(우천 시에는 예외).
- (12) 삼각대(승인된 언론사는 예외).

d.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의 경호안내요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복장을 착용한 방문객들은 MACHA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경호안내요원의 결정에 방문객이 항의하는 경우에는 즉시 유엔사군정위 인원에게 회부한다. 안보견학에 참가하는 방문객들이 부적절한 복장을 착용한 상태로 캠프 보니파스에 오는 경우, 이들이 캠프 보니파스에서 안보견학 브리핑을 받는 것은 허용되나 MACHA 를 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 시간 엄수는 중요하다. 개인 및 단체는 견학 예정 시간이 캠프 보니파스에서 브리핑이 시작되는 시간임을 주지해야 한다. 견학 인원들은 견학 예정 시간 15 분 전에 캠프 보니파스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동 시간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사전 통보 없이 10 분 이상 지각하는 단체의 견학은 취소된다.

f. 방문객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으나, MACHA는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인원들은 유엔사 안내요원 또는 경호요원의 지시를 반드시 따르고, 북한군을 비하 혹은 자극하거나 유엔사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g. 방문객들은 북한군 측 인원들과의 어떠한 형태의 구두, 비구두 혹은 신체적 접촉도 삼가야 한다.

h. 방문객들은 공동경비구역 안보견학관 기념품점의 정상 영업 시간 동안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i. 판문점 내에서 사진촬영은 허용되나 브라보 초소(캠프 보니파스와 비무장지대 남방철책선 사이)에서 찰리 초소(판문점 입구)까지 이동 중에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필름은 압수되며 디지털 사진은 삭제된다. 안내요원은 사진 촬영이 금지되는 시점을 명확히 공지해야 한다.

별지 C

귀빈 및 내빈 견학 신청 양식 및 안내서

군정위 본부구역(MACHA) 귀빈/내빈 견학 신청 양식 - 파트 A			신청일자:		
1 신청인 정보					
a	견학 신청 부대/기관명				
b	소재지				
c	계급/성명				
d	직위/직책				
e	직장 전화번호				
f	휴대전화번호				
g	견학 후원(초청)기관/후원인				
h	이메일				
2 귀빈/내빈 성명/계급/직위					
a	성명				
b	계급(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				
c	직위/직책(약어는 풀어 쓸 것)				
d	국적				
참고:	준장(및 이에 상응하는 직급) 이상은 약력 첨부.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민간인도 포함됨.				
3 단체 규모/명단					
a	총 인원 수				
b	귀빈/내빈 개인 경호원 동반 여부 * 동반할 경우, 첨부된 지침 참조-파트 B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c	성명(전원 기재)	계급	직책/직위	국적	
1.					
2.					
참고:	1. 20명 초과 시 추가 협의가 필요함. 2. 견학 승인을 위해서는 견학 명단에 모든 필수 정보를 기입해야 함.				
4 비무장지대까지의 교통편					
a	유형(버스/승합차/승용차/헬기) 참고: 헬기 이용 시 악천후 예비 계획이 필요함.				
b	제조사/모델명, 색상, 차량 등록 번호				
5 MACHA 견학 일자/시간					
a	희망 일자		예비 일자		
b	희망 시간	<input type="checkbox"/> 0900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1315	<input type="checkbox"/> 1415
6 언어					
a	영어/한국어/기타(구체적으로 명시)				
7 일정					
a	브리핑/견학 유형	유엔사군정위	<input type="checkbox"/>	혹은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input type="checkbox"/>
b	제 3 땅굴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c	도라 전망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참고:	유엔사군정위 브리핑은 주로 유엔사, 정전협정 및 정전관리 활동에 대해 설명함. 첨부된 지침서 및 규칙(파트 B, C)을 읽고 숙지해야 함.				

양식 C-1. 파트 A: 귀빈/내빈 견학 신청 양식

귀빈 및 내빈 견학 계획 시 고려사항: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브리핑 및 회담장 구역, 유엔사 제 3 초소 및 돌아오지 않는 다리 견학 예상 소요 시간은 90 분이다.

견학 미실시일: 매주 일요일, 월요일 및 한, 미 공휴일.

유엔사군정위 브리핑: 브리핑 및 질의응답 예상 소요 시간은 20~30 분이다. 본 브리핑은 유엔사의 창설, 정전협정, 정전협정에 의거하여 창설된 위원회,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유엔사군정위)의 현재 역할 및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본 브리핑은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대한 영향력을 지닌 귀빈/내빈 견학단 또는 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정치적 사안들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는 귀빈/내빈 견학단을 기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 3 땅굴 견학 계획 시 고려사항:

- MACHA 에서 제 3 땅굴까지 예상 이동 시간은 15 분이다.
- 비무장지대 영상물 시청, 제 3 땅굴 전시관 및 제 3 땅굴 견학 예상 소요 시간은 60 분이다.

도라 전망대 견학 계획 시 고려사항:

- MACHA 에서 도라 전망대까지 예상 이동 시간은 15 분이다.
- 도라 전망대 브리핑 및 견학 예상 소요 시간은 30 분이다.

중립국감독위원회(중감위) 지원: (브리핑 및 중식 포함)

- 본 서비스는 중감위의 승인이 필요하다: 비용: 1 인당 미화 5.55 달러(변경될 수 있음). 중감위의 승인 여부는 지원 가능 여부, 사전 통보 및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승인될 경우, 중감위 브리핑 및 중식은 11 시 45 분에 시작하여 13 시 15 분에 종료된다.

도라산역: 통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사전 통보가 필요하다(안보견학장이 아님).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통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사전 통보가 필요하다(안보견학장이 아님).

언론사 취재 지원: 언론사 취재 지원은 유엔군사령부 공보실(유엔사 공보실) 실장을 통해 일정을 수립한다. 모든 언론사 방문객들은 방문 목적을 불문하고 반드시 유엔사 공보실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연락처: 미군전화 723-6029/723-4668.

개인 경호팀: 귀빈 수행원 중 무기를 소지한 개인 경호팀(해당 국가 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공)이 있을 경우, 반드시 유엔사군정위 및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와 사전에 협조해야 한다. 무기를 소지하고 MACHA 에 출입하는 것은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이 사안별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식당 지원: 본 서비스는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비용: 1 인당 미화 5.55 달러(변경될 수 있음). 통상적으로는 제공되지 않으며, 1 주일 전 사전 통보가 필요하다.

견학 신청서(파트 A) 우선 제출: 견학 희망일 최소 14 일 전까지 pacom.yongsan.uncmac.mbx.education-and-orientation@mail.mil 로 제출한다.

양식 C-2. 파트 B: 귀빈/내빈 견학 - 계획 수립 지침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MACHA) 방문이 성공적이며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명시된 규칙 및 절차를 검토하고 모든 견학 인원에게 전달한다:

1.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방문이 예기치 않게 취소될 수 있음을 양지한다. 이러한 외부 요인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a. MACHA 내 작전 임무.
 - b.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유엔사군정위)와 북한군 간 회담
2. 복장 및 용모 방침은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궁금한 사항은 공동일직실로 문의한다. 부적절한 복장을 착용한 채 또는 복장 및 용모 방침을 위반한 채 도착하는 인원(민간인 혹은 군인)들은 MACHA 출입이 불허된다.
3. MACHA 로 이동하는 모든 인원은 출발지를 떠나기 전에 신분증 또는 여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통일대교를 통과하기 전에 신원 확인이 실시될 수도 있다.
4. MACHA 견학 전 음주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견학이 취소된다.
5. 본 정보, 첨부 문건 혹은 안보견학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MACHA 안보견학 담당관에게 미군전화 734-8067 로 문의한다. 업무시간은 월~금요일 09 시부터 17 시까지이다. 업무 시간 이후에는 일반 전화 010-8995-8515 또는 pacom.yongsan.uncmac.mbx.education-and-orientation@mail.mil 로 연락한다.
6. 기타 문의 전화 번호:
 - 공동일직실: 국방교환망 734-8515
 -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도라 전망대): 국방교환망 734-8822
 - MACHA 전술작전본부: 국방교환망 734-8514

양식 C-3. 파트 C: 귀빈/내빈 견학 - 규칙 및 절차

별지 D

귀빈/내빈 견학단의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식당 이용

D-1. 캠프 보니파스의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식당은 매 식사 때마다 추가로 귀빈/내빈 견학단 인원 20 명을 수용할 수 있다. 캠프 보니파스 식당은 통상적으로 캠프 보니파스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 및 군무원들에게 필요한 양의 음식만 준비한다. 하지만 견학객들도 적절한 협의를 통해 캠프 보니파스 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

D -2. 캠프 보니파스 식당 이용 시 다음의 지침이 적용된다:

- a. 식사 협의는 반드시 식사 희망일 1 주일 전에 시작해야 한다.
- b. 식대는 반드시 미화로 지불해야 한다. 비용은 1 인당 5.55 달러이다(변경될 수 있음).
- c. 견학단이 사전에 식사를 협의한 후 이를 취소할 경우에는 늦어도 견학 예정일 48 시간 전까지 반드시 이를 식당에 통보해야 한다. 만일 48 시간 전까지 취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청 기관이 식대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d. 식사 제공 시간:

(1) 월요일 ~ 금요일:

아침 0730~0900

점심 1130~1300

저녁 1630~1800

(2) 토요일:

아침 0730~0900

점심 1130~1300

저녁 1600~1730

(3) 일요일 및 공휴일:

브런치 1100~1300

별지 E

일반 견학 신청 양식 및 안내서

관문점/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지대 일반 안보견학 신청		신청일자:	
번호	필수 기재사항	답변	
1	신청인 정보		
a	견학 신청 부대 혹은 기관명		
b	소재지		
c	신청인 성명/계급(담당자)		
d	연락 전화번호 - 직장		
e	팩스 번호		
f	휴대전화번호		
2	단체 규모		
a	인원 수		
참고:	일반 견학의 최대 인원 수는 90 명, 최소 인원 수는 10 명임.		
3	세부사항		
a	희망 일시 - 선택(A, B 또는 C)		
b	예비 일시 - 선택(A, B 또는 C)		
c	도라 전망대 견학 여부 -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d	제 3 땅굴 견학 여부 -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4	브리핑 언어		
a	영어/한국어		
5	단체 구성		
a	대한민국 국민 포함/동반 여부 (아래 참고)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b	기자/언론사 동반 여부 (아래 참고)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견학 신청 안내

- 신청 부대/단체는 견학장까지의 왕복 교통편을 자체 제공해야 한다. 개인차량은 허가되지 **않는다**. 일반 견학 가능 시간은 화요일~토요일이며, 토요일은 MWR 과 USO 활동만 가능하다.
-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은 견학 미실시일이다.
- **방문객 전원의 명단을 MACHA 방문 예정일로부터 최소 48 시간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견학단에 대한민국 국민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 신원보증서를 작성해 **견학일로부터 최소 2주 전까지** MACHA 안보견학 담당관에게 전달한다.
- 언론사 관계자는 방문 목적에 관계없이 반드시 유엔군사령부 공보실(UNC PAO) 실장을 통해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모든 언론사 방문객들은 반드시 공보실 인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연락처: 국방교환망 723-6029/723-4668
- 견학이 허용되는 인원의 최소 연령은 만 10 세이다.
- 신청서는 반드시 희망일로부터 최소 14 일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 3 땅굴 및 도라 전망대 견학: MACHA 견학에 이어 제 3 땅굴 및 도라 전망대 견학 일정을 계획할 수 있다. 제 3 땅굴과 도라 전망대는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에 폐장한다. **제 3 땅굴 및 도라 전망대 방문에는 MACHA 에서 제공된 안내요원이나 차량이 포함되지 않는다.** MACHA 견학 소요 시간은 약 90 분이다. 제 3 땅굴 및 도라 전망대 견학 소요 시간 또한 90 분이다. MACHA 견학에 제 3 땅굴과 도라 전망대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2주 전에 통보해야 한다. 10 분 이상 늦게 도착하는 견학단은 견학이 취소된다.

일정 선택

선택 A: 오전 - 연중		선택 B: 오후 - 하절기 (4 월 1 일 ~ 10 월 30 일)		선택 C: 오후 - 동절기 (11 월 1 일 ~ 3 월 31 일)	
0900~1030	군정위 본부구역	1400~1500	제 3 땅굴	1330~1350	도라 전망대
1045~1145	제 3 땅굴	1515~1545	도라 전망대	1400~1500	제 3 땅굴
1200~1230	도라 전망대	1600~1730	군정위 본부구역	1515~1645	군정위 본부구역

양식 E-1. 일반 견학 신청 양식

군정위 본부구역(MACHA) 전학자 명단

단체명:	인솔자(담당자) :	
견학일:	전화번호:	이메일:

좌석번호	성명(성, 이름 및 중간이름 첫 글자)	계급 혹은 민간인	국적, 여권번호 혹은 미군 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이 양식을 방문 최소 48 시간 전까지 MACHA 안보견학 담당관에게 제출하시오.

양식 E-2. 군정위 본부구역(MACHA) 견학자 명단

일반 견학 계획 시 고려사항: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브리핑 및 회담장 구역, T-2 건물, 유엔사 제 3 초소 및 돌아오지 않는 다리 견학 예상 소요 시간은 90 분이다.

견학 미실시일: 매주 일요일, 월요일 및 한, 미 공휴일.

제 3 땅굴 견학 계획 시 고려사항:

- 군정위 본부구역에서 제 3 땅굴까지 예상 이동 시간은 15 분이다.
- 비무장지대 영상물 시청, 제 3 땅굴 전시관 및 제 3 땅굴 견학 예상 소요 시간은 60 분이다.

도라 전망대 견학 계획 시 고려 사항:

- 군정위 본부구역에서 도라 전망대까지 예상 이동 시간은 15 분이다.
- 도라 전망대 브리핑 및 견학 예상 소요 시간은 30 분이다.

견학 신청서(파트 A) 우선 제출: 견학 희망일 최소 14 일 전까지 pacom.yongsan.uncmac.mbx.education-and-orientation@mail.mil 로 제출한다.

양식 E-3. 파트 B: 일반 견학 - 계획 수립 지침

군정위 본부구역(MACHA) 방문객 확인서
(유엔사 규정 551-5 / 유엔사 양식 12EK)

MACHA 방문객들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읽고 서명해야 한다:

유엔군사령부(UNC)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MACHA) 방문은 적대 지역 출입을 수반하며, 적의 행위로 인해 부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MACHA는 중립적이지만 분리된 지역으로 일방(남측)에는 유엔사 군인들이, 다른 일방(북측)에는 북한군(KPA) 인원들이 경계를 서고 있다. 유엔사 측 방문객들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군의 통제하에 있는 MACHA로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으나, 유엔사, 미국 및 대한민국은 방문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적이 적대적 행위를 자행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방문객들은 다음의 지시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a. 유엔사/대한민국 군인들은 각 군이 착용하도록 규정한 적절한 군복을 착용해야 한다. 기타 방문객들은 유엔사의 품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적절한 사복을 착용해야 한다.

b. MACHA 출입에 앞서 방문객(군인 포함)들은 유엔사가 승인한 방문객임을 표시하는 코팅 처리된 방문객 배지를 수령한다. 방문객 배지는 걸옷 좌측 상단에 반드시 달아야 한다. 방문객 배지는 캠프 보니파스를 떠나기 전에 반납해야 한다.

c. 북한군 측 인원과의 대화를 포함한 친교 활동이나 기타 어떠한 접촉도 엄격히 금지된다. 북한군 측 인원은 다음과 같이 식별된다.

(1) 군인 - 갈색 또는 탁한 녹색의 북한 군복

(2) 취재 인원 - 녹색 완장

(3) 방문객 - 사복

d. 방문객들은 북한군 측이 유엔사에 대한 비방 선전에 이용할 수 있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위나 몸짓 또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e. 방문객들은 견학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소속 견학단과 함께 있어야 하며, 안내요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불만사항은 캠프 보니파스로 복귀한 후에 제기한다.

f. 총기, 칼 등 그 어떤 종류의 무기도 MACHA로 반입할 수 없다.

g. 북한군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지역 및 건물(군사분계선 건너 이북에 위치한 회색이나 은색 건물)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출입할 수 없다. 회담장 구역의 유엔사 건물(파란색)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안내요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양식 E-4. 일반 견학 방문객 확인서(유엔사 양식 12EK)

h. 방문객들은 어떤 경우에도 군 대형을 막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회의실 내부의 가구나 장비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사진 촬영은 군정위 본부구역 내에서는 허가되나, 브라보 초소(캠프 보니파스와 비무장지대 남방철책선 사이)에서 찰리 초소(회담장 구역 입구)까지 이동 중에는 금지된다.

i. 만약 어떤 사건이 발생할 경우 침착함을 유지하며 경호요원이 내리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상기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은 안내요원에게 문의한다.

확인서

본인은 본 지시사항을 읽고 숙지하였으며 이를 준수할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 또는 본인 책임하의 미성년자를 본 견학에 동반하였을 경우, 본 지시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이들을 대신하여 서명합니다.

서명: _____

일자: _____ .

양식 E-4. 일반 견학 방문객 확인서 - 계속

별지 F

유엔사가 지정한 단체의 제 3 땅굴 및 도라 전망대 출입

F-1. 최소한 아래 요일과 시간은 유엔사가 지정한 비무장지대 견학단의 제 3 땅굴 및 도라 전망대 견학을 위해 비워둔다: 화요일~토요일 10:45~12:00 및 13:00~15:45. 이러한 견학은 별지 C, 양식 C-2 에 제시된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유엔사가 지정하는 단체 당 총 인원 수는 65 명을 넘을 수 없다.

F-2. 귀빈/내빈 단체의 경우, 유엔사군정위는 견학이 실시되기 최소 24 시간 전까지는 한국군 1 사단에 통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귀빈/내빈 견학의 특성상, 유엔사군정위가 통제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유엔사군정위는 24 시간 내에도 일정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모든 귀빈/내빈 단체는 제 3 땅굴 모노레일 이용에 있어 우선권을 갖는다.

F-3. 유엔사군정위는 귀빈/내빈 견학의 취소를 통보받는 즉시, 가능하면 24 시간 전에 이를 1 사단에 통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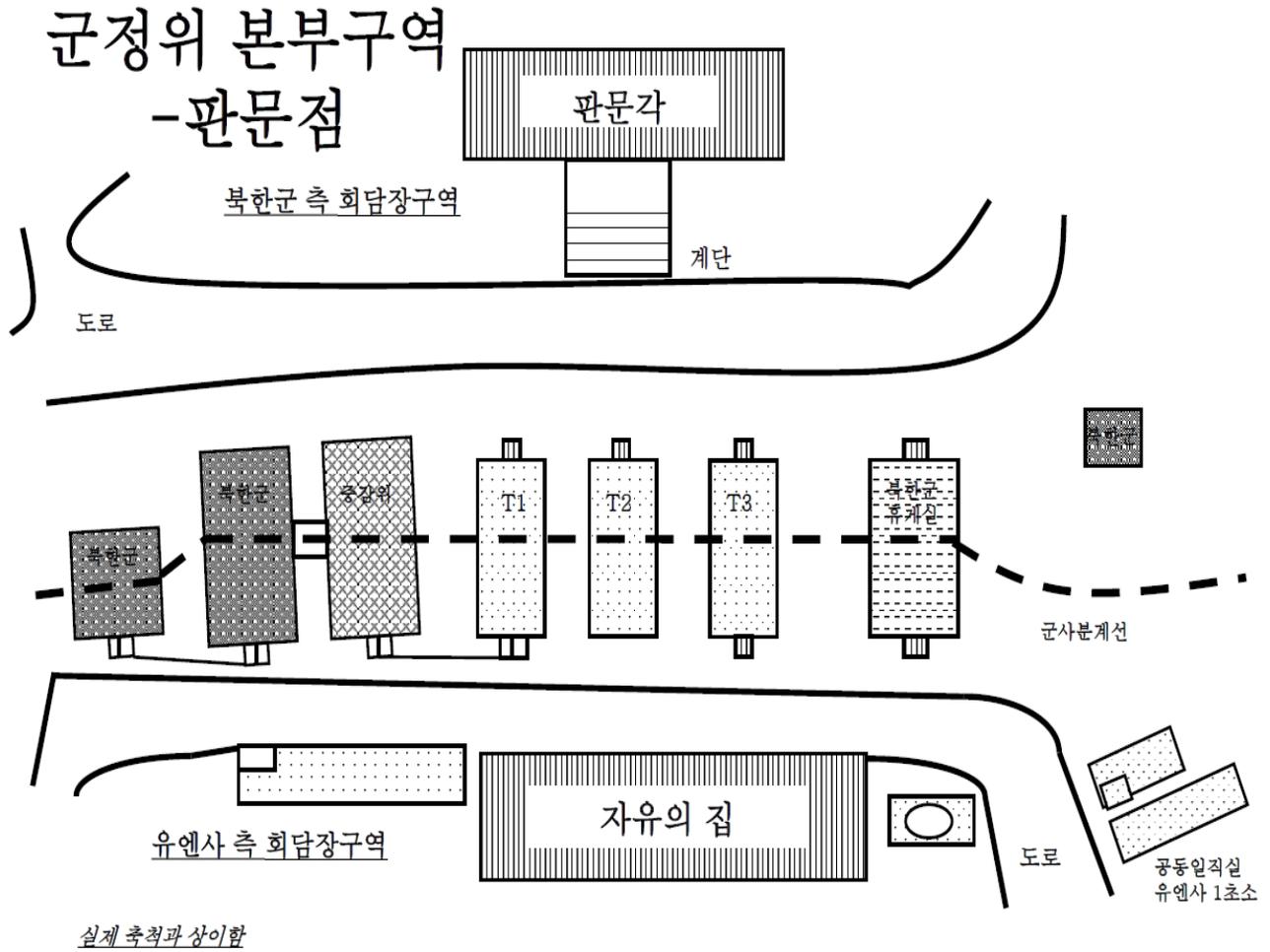
F-4. 유엔사군정위는 일요일이나 월요일 또는 대한민국 공휴일에 일반 견학 일정을 수립하지 않는다.

F-5. 유엔사가 지정한 비무장지대 견학단은 제 3 땅굴 또는 도라 전망대 방문 시 어떠한 요금도 지불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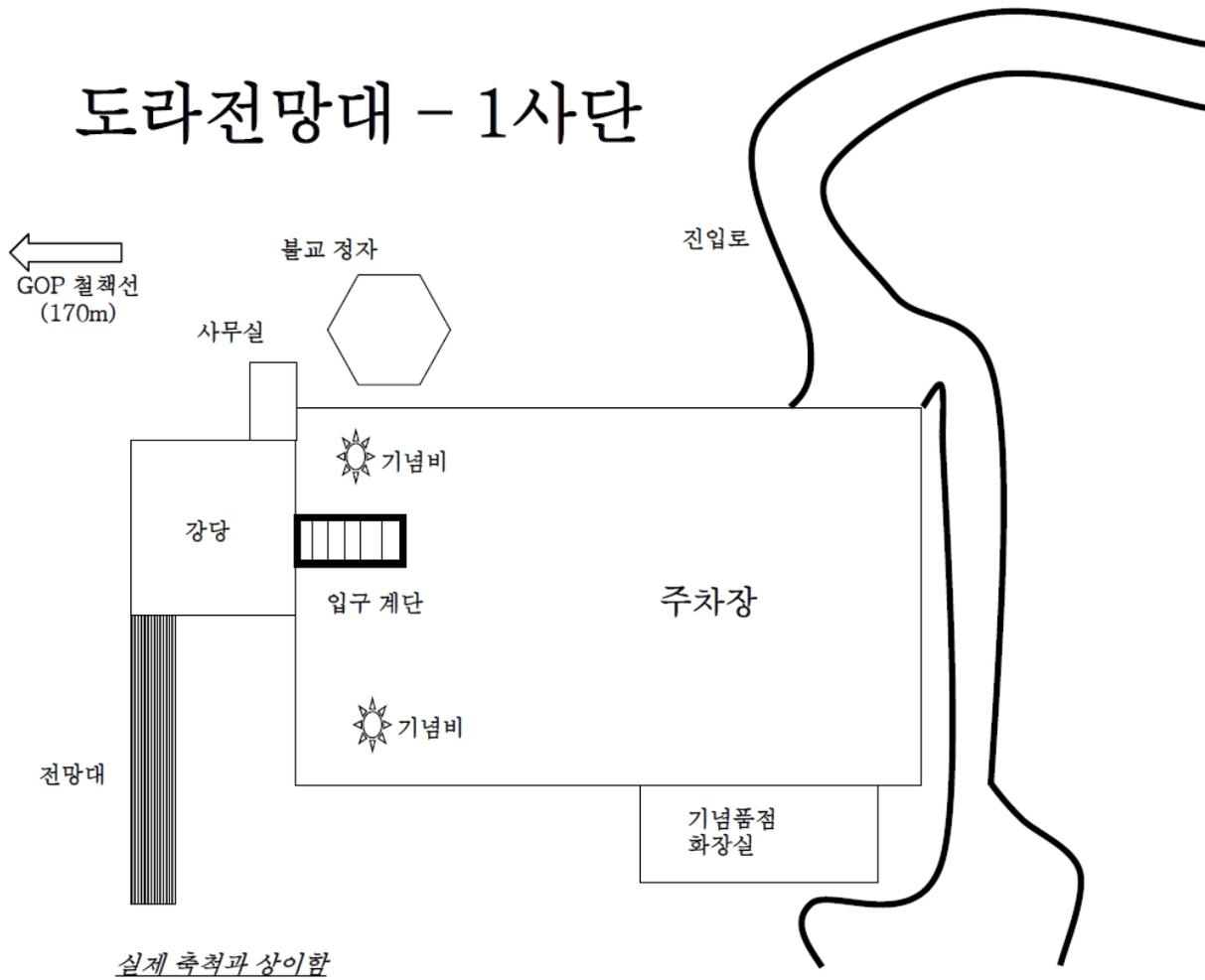
F-6. 유엔사군정위는 제 3 땅굴 및 도라 전망대를 방문하는 비무장지대 일반 견학단의 주간 일정표를 한 주 전 목요일에 한국군 1 사단에 제공한다. 1 사단 작전참모처는 견학 신청서를 파주시와 도라 전망대에 전달할 책임이 있다.

F-7. 1 사단은 모든 견학이 정전협정, 유엔사 규정 551-4, 그리고 본 규정의 모든 조항에 의거하여 실시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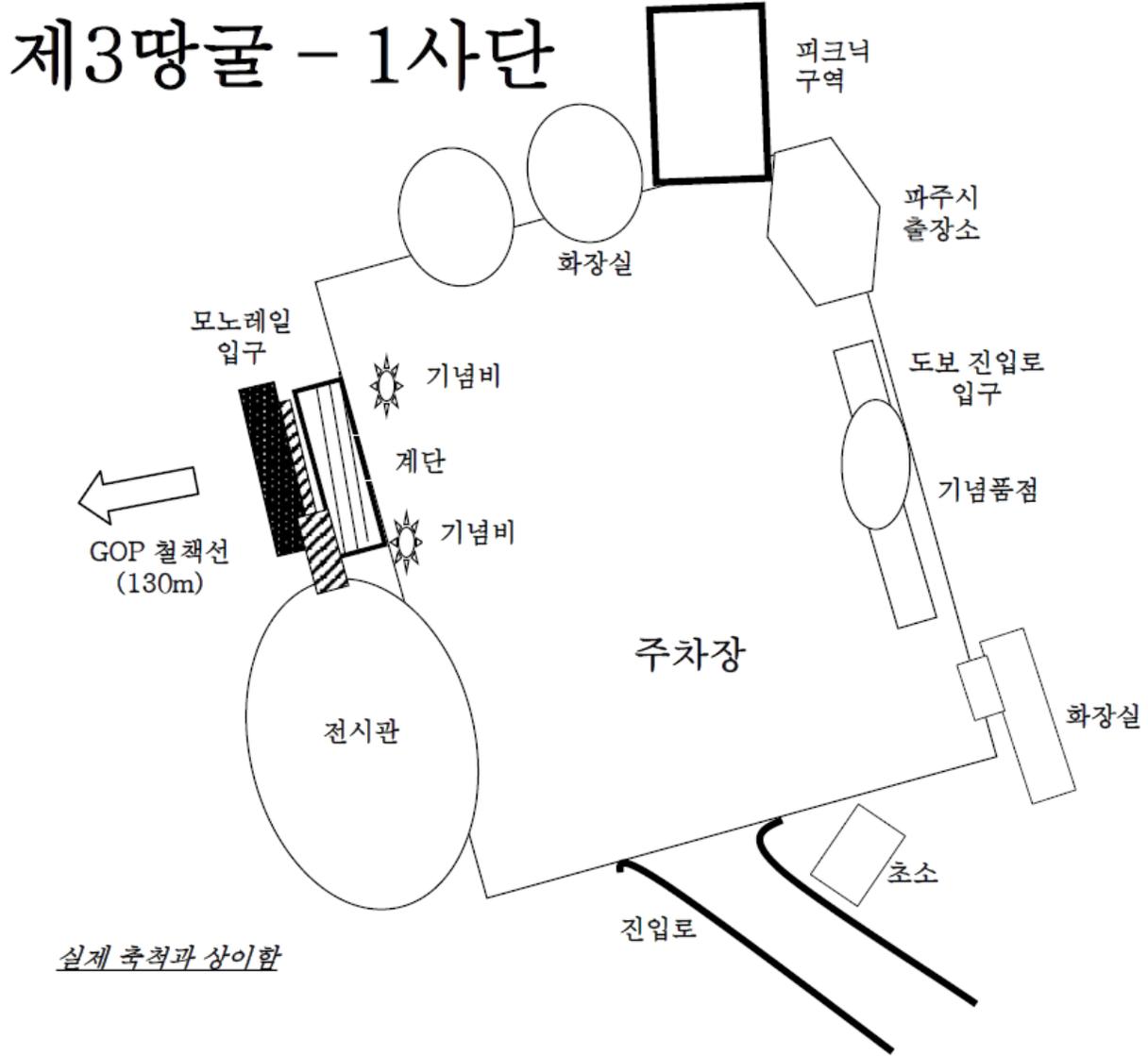
G-2. 군정위 본부구역(MACHA) - 판문점 - 회담장 구역 요도



G-3. 도라 전망대- 1사단 안보견학장 요도



G-4. 제 3 땅굴 - 1사단 안보견학장 요도



별지 H

군정위 본부구역(MACHA)을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원보증 절차

H-1. 대한민국 통일부는 MACHA 방문을 희망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래 열거된 조항에 의거하여 신원보증을 받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다. 본 절차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며, 정식 대한민국 국민 신원보증서를 늦어도 견학 희망일로부터 14 일 전까지 수신: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참조: 군정위 연락단으로 제출해야 한다.

H-2. 신원보증 권한자는 다음과 같다:

- a. 대한민국 장성급 장교들은 자신의 신원보증서에 직접 서명할 수 있다. 그 외 모든 대한민국 장교, 부사관 및 사병들은 부대 지휘관 또는 영관급 이상 되는 감독관급 지휘관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b. 카투사로 미군과 함께 복무하는 대한민국 사병들은 신원보증서에 부대 지휘관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c.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들은 국장급 또는 부서장급 공무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d. 대한민국 군 장교 또는 공무원의 민간인 가족들은 신원보증서에 배우자의 지휘관 또는 감독관급 부서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e. 주한미군, 유엔사 회원국 및 주한 외국 공관에 고용된 대한민국 민간인들은 해당 지휘관, 감독관 또는 대사에 의해 신원보증을 받는다.
- f.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미 국방부 인원의 부양가족일 경우, 이들은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g. 위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대한민국 민간인들은 신원보증서에 지역 경찰서장 또는 3 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공무원 두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신원보증서
KOREAN NATIONAL CLEARANCE DECLARATION

- 방문희망일시 (Date/Time of Visit) :
- 방문단 명칭 (Name of Visiting Group) :
- 인솔자 (Leader of Group) :
- 전화번호 (Tel No.) :

번호 (No.)	성명 (Name)	성 별 (Sex)	계급/직위 (Rank)	주민등록번호 (KID No.)	현주소 (Present Address)
1					
2					
3					
4					
5					
6					
7					
8					

본인은 위의 기재된 사항들이 정확한 사실이며 상기 신청인들의 판문점 방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보증함.

I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and that I know of no information which would preclude a visit to the Panmunjom area by the subject applicants.

신원보증 일자 (Date):

신원보증인 서명 · 날인
CERTIFYING OFFICIAL

서명 또는 날인 (Signature or Seal)

성명 (Name)

소속 및 직위 (Organization & Title)

전화번호 (Tel No.)

* If not enough space is allocated, please attach a separate sheet using the same format as above.
공간이 충분치 않을 경우, 위와 같은 양식의 용지를 별도로 첨부해 주십시오.

양식 H-1. 대한민국 국민 신원보증서

용어집
약어

AA	정전협정
CCT	남북관리구역 통제반
CFC	한미 연합군사령부
DCP	지정국 인원
DFAC	식당
DMZ	비무장지대
DPRK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DV	귀빈
E&OP	안보견학
EOP	지도자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GP	경계초소
IAW	~에 의거
ID	신분증
JCS	합동 참모본부
JDO	공동 일직장교
JSA	공동 경비구역
KATUSA	미 육군에 증원된 한국군
KPA	조선 인민군
MACHA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MDL	군사분계선
NNSC	중립국 감독위원회
OP	전망대, 초소

OPORD	작전명령
PAO	공보실
PMJ	판문점
POC	담당자, 연락처
ROK	대한민국
ROKA	대한민국 육군
ROKASB-JSA	대한민국 육군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ROKAG	군정위 한국군 연락단
SEC	비서장
SG	내빈
TC-West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UNC	유엔군사령부
UNCMAC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UNCMACHA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UNCSB-JSA	유엔군사령부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U.S.	미합중국
USFK	주한미군